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의 성과와 시사점

김 승 중*

1. 서론

미국의 경지면적(3억 6,430만ha)¹⁾은 우리나라 농지면적(159.6만ha)²⁾의 228.3배에 달한다. 이처럼 미국은 대규모의 경지면적을 보유하면서도 농지보호를 위해 연방·주·지방별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농지보호를 위해 연방정부는 농지보호정책법 및 농지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주정부는 농업구역 지정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종합계획, 농업보호지역 등 용도지역 지정 및 개발권 양도 등을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의 농지보호제도의 체계를 살펴보고, 이 중에서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를 중심으로 그 성과와 한계를 통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2. 미국의 농지보호제도의 체계

2.1. 체계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따라서 각각 농지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농지보호정책법(Farmland Protection Policy Act)」에 따른 농지전용심사, 「농업증진 및 개혁에 관한 법률(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1996년)」과 「농업보호 및 농촌투자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에 따른 농지보호프로그램을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sjkim@krihs.re.kr). 본고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 2013, 「미국의 농지 관련 법령: 해설·번역·원문」에서 필자가 집필한 내용 및 김승중, 2015. 3,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제21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을 수정·보완한 내용임.

1) 미국의 농지면적은 900,217,576에이커(364,305,128ha)에 달함(USDA, 2017).

2) 2018년 말 경지면적은 159.6만ha에 달함(통계청, 2019. p.1).

운용한다. 주정부는 농업구역지정을 통해 농지보호, 「재산세법」을 통해 농지보유세 부담 완화, 농지보전지역권 매입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종합계획 및 농업보호지역 등 용도지역의 지정,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 및 개발권 양도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표 1> 미국 농지보호제도의 체계

농지보호제도	연방	주	지방
농지보호정책법(Farmland Protection Policy Act)	○		
농지보호프로그램(Farmland Protection Program)	○		
농업구역(Agricultural District)		○	
재산세법(Tax Relief & Economic Assessment Programs)		○	
영농권법(Right to Farm Law)		○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ning)			○
농업보호지역(Agricultural Protection Zoning)			○
보전지역권(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	○
개발권양도(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

자료: 김승중(2015a, p.132에서 수정).

2.2. 주요내용

2.2.1. 연방정부의 농지보호제도

연방정부의 농지보호제도는 「농지보호정책법」에 따른 농지전용심사제도와 농지보호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농지전용심사제도는 연방정부는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농지를 타용도로 전환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농지전용에 대한 심사를 통해 농지를 보호한다. 연방정부는 농지전용에 대한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³⁾ 둘째, 농지보호 프로그램은 농지가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농지보전지역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보호 프로그램은 우량농지 등을 타용도로 전환하지 않을 것을 토지소유자와 계약하고, 개발제한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

3) 농지를 사업부지에 포함하는 경우 연방기관은 농지전용영향평가서(Farmland Conversion Impact Rating Form; form AD-1006)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평가서는 토지 및 입지평가(Land Evaluation and Site Assessment, LESA)에 기초를 두고 있음(김승중 2015a, p.142).

2.2.2. 주정부의 농지보호제도

주정부는 농업장려를 위한 농업구역의 지정, 재산세 감면을 위해 납세상한제도, 영농권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운용하고 있다. 첫째, 농업구역은 용도지역인 농업보호지역과 달리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당해 구역 내 농민의 세금감면, 보전지역권 매입 대상 자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2, p.4).

둘째, 「재산세법」은 농지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 농지가격을 농업적 이용 가치로 평가하거나, 재산세의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American Farmland Trust. 2006. p.1). 셋째, 「영농권법」은 영농행위에 따른 인근 주민의 소송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영농권법」은 농업인의 영농행위가 인근 주민의 소음, 악취 등 생활방해(nuisance)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이에 관한 인근 주민의 소송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⁴⁾

2.2.3. 지방정부의 농지보호제도

지방정부는 군(county)이나 시(city)의 장래 미래상 및 공간구조를 설정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업보호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을 지정하며, 개발권 양도 등을 통해 농지를 보전하고 있다. 첫째, 종합계획은 군(county), 시(city), 읍(town) 등 장래 비전을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농업임업주거상업산업위락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의 지정 근거 및 공공시설의 개발계획 등을 포함한다(American Farmland Trust 2008. p.3; 김승중 2015a. p.147). 둘째, 농업보호지역은 조례를 통해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농지의 무질서한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 허용 밀도와 용도를 제한한다.⁵⁾ 셋째, 개발권 양도(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는 하나의 필지(송출지역)의 잠재적 개발권을 다른 필지(수용지역)으로 이전하는 대신, 송출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수용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증가한 개발권만큼 송출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⁶⁾

4) 1963년 캔자스주가 처음으로 생활방해소송에서 측사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1994년 유타주는 농업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영농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규정하면서 모든 주에서 영농권에 관한 법률을 갖게 됨(American Farmland Trust. 1998. p.1; 김승중. 2015a. p.147).

5) 일부 조례는 영농권에 관한 사항, 사업적 영농행위에 대한 사항 및 농업적 수익성을 제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도 함(American Farmland Trust 2008a. p.1).

6) 1980년 이후 매릴랜드의 몽고메리군은 개발권 양도제도를 통해 51,489에이커의 농지를 보호해 오고 있으며, 미네소타주에서는 1996년 블루어스군에서 처음으로 개발권 양도제도를 도입하여 2004년까지 총 9,542에이커(38.7km²)의 농지를 보전하고 있음(American Farmland Trust 2008b. p.2).

<표 2> 미국의 주별 농지보호제도의 운영 현황

주별	농업구역 (Agricultural Districts)	납세상한제 (Circuit Breaker)	차별적 평가제 (Differential Assessment)	영농권법 (Right to Farm)	보전지역권 매입제도 (PACE)	개발권 양도 (TDR)
합계	16	4	49	50	32	24
Alabama			▲	▲		
Alaska			▲	▲		
Arizona			▲	▲	▲	
Arkansas			▲	▲		
California	▲		▲	▲	▲ ◆	◆
Colorado			▲	▲	▲ ◆	◆
Connecticut			▲	▲	▲	◆
Delaware	▲		▲	▲	▲	◆
Florida			▲	▲	▲	◆
Georgia			▲	▲	▲ ◆	◆
Hawaii			▲	▲	▲	
Idaho			▲	▲		◆
Illinois	▲		▲	▲	◆	
Indiana			▲	▲		
Iowa	▲	▲	▲	▲		
Kansas			▲	▲		
Kentucky	▲		▲	▲	▲ ◆	◆
Louisiana			▲	▲		
Maine			▲	▲	▲	◆
Maryland	▲		▲	▲	▲ ◆	◆
Massachusetts	▲	▲	▲	▲	▲	◆
Michigan				▲	▲ ◆	
Minnesota	▲ ◆		▲	▲	◆	◆
Mississippi			▲	▲		
Missouri			▲	▲		
Montana			▲	▲	◆	◆
Nebraska			▲	▲		
Nevada			▲	▲		◆
New Hampshire			▲	▲	▲ ◆	◆
New Jersey	▲		▲	▲	▲ ◆	◆
New Mexico			▲	▲		◆
New York	▲	▲	▲	▲	▲ ◆	◆

(계속)

주별	농업구역 (Agricultural Districts)	납세상한제 (Circuit Breaker)	차별적 평가제 (Differential Assessment)	영농권법 (Right to Farm)	보전지역권 매입제도 (PACE)	개발권 양도 (TDR)
North Carolina	▲		▲	▲	▲◆	
North Dakota			▲	▲		
Ohio	▲		▲	▲	▲	
Oklahoma			▲	▲		
Oregon			▲	▲	◆	
Pennsylvania	▲		▲	▲	▲◆	◆
Rhode Island			▲	▲	▲	
South Carolina			▲	▲	▲	
South Dakota			▲	▲		
Tennessee	▲		▲	▲		
Texas			▲	▲		
Utah	▲		▲	▲	▲	◆
Vermont			▲	▲	▲	◆
Virginia	▲◆		▲	▲	▲◆	◆
Washington			▲	▲	▲◆	◆
West Virginia			▲	▲	▲	
Wisconsin		▲	▲	▲	◆	◆
Wyoming			▲	▲		

주: ▲(주정부), ◆(지방정부)

자료: American Farmland Trust(2008a. 2, p.8).

3. 미국의 농지보전매입제도의 성과와 한계

3.1. 배경

뉴욕주 서폴크 군(county)은 1974년에 처음으로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를 도입하였고, 메릴랜드주(1977년), 매사추세츠주(1977년), 코네티컷주(1978년), 뉴햄프셔주(1979년)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를 추진하였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4a. p.1; 김승중 2015b. p.130). 연방정부는 1996년 농지 및 초지보호 프로그램(Federal Farm and Ranch Lands Protection Program)을 도입하여 농지보전지역권을 매입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4a. p.1; 김승중 2015b. p.130). 2016년 현재 49개

주에서 농지보전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1981년 「표준 보전 지역권에 관한 법률(the Uniform Conservation Easement Act)」은 주법률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 보전기관이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6. p.1).

3.2. 개념

농지보전매입제도(purchase of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는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의 잠재적인 개발권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지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소유자는 정부 또는 농지보전기구와 계약을 통해 농지를 전용하지 않는 대신 농지전용에 따른 토지가격상승분에 대한 가치를 보상받고, 정부는 보전이 필요한 농지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농지소유자는 자발적으로 농지보전지역권을 정부기관 또는 민간 농지보전기구에 매각하고, 정부기관 또는 민간 농지보전기구는 해당 농지의 제한적 이용가치와 주거 또는 상업적 이용가치와의 차액을 지불한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4a. p.1; 김승중 2015b. p.130). 보전지역권이 설정되는 경우에 토지분할(subdivision), 비농업적 개발 등 농업적 이용목적 이외의 다른 이용이 제한된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6. p.1). 대부분의 보전지역권은 영구적으로 설정되지만,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전지역권이 설정되기도 한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6. p.1).

3.3. 미네소타 주 입법례

보전지역권은 자연적경관적-공개공지로서의 가치 보호와 유지, 농업산림휴양 등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지역권자의 권한을 말한다(김승중 2015b. p.134).⁷⁾ 지역권자는 연방법 또는 미네소타 주법에 따른 공익법인, 공익협회, 공익신탁기관이 될 수 있다(김승중 2015b. p.134).⁸⁾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전지역권 설정기간은 무제한으로 본다(김승중 2015b. p.134). 지역권 설정으로 인해 권한이 제한된 부동산을 소유한 자, 지역권자, 지역권

7) Minn. Stat. §84C.01.

8) Minn. Stat. §84C.01.

설정권한을 보유한 제3자 및 다른 법에서 승인한 자에 관한 소송은 보전지역권에 영향을 미친다(김승중 2015b. p.134).⁹⁾ 그러나 보전지역권은 부동산에서 수익이 없거나, 지역권이 분할되거나, 소유자에게 부담이 설정되거나, 지역권자 또는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 자에게 적극적인 책임을 부과하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김승중 2015b. p.134).¹⁰⁾

3.4.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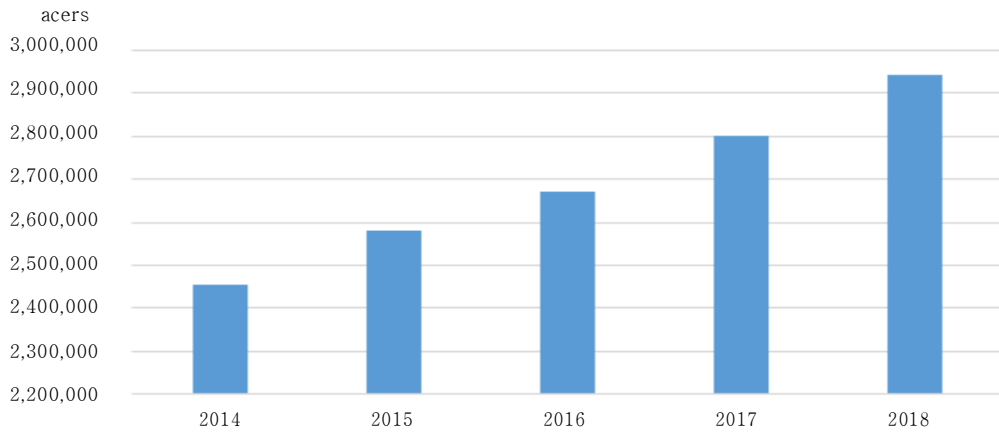
애리조나, 조지아와 미주리 주는 보전지역권 매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고, 몬태나 주는 2013년부터 보전지역권 매입권한이 상실되었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8. p.1). 델라웨어나 메사추세츠주의 경우 주정부가 직접 지역권을 매입하고 있으며, 다른 주의 경우에는 지방정부(county)와 함께 지역권 매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4b. p.1; 김승중. 2015b. p.133). 뉴욕주나 버지니아주의 경우 지방정부나 토지신탁업자에게 지역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4b. p.1; 김승중 2015b. p.133). 앨라바마나 뉴멕시코주의 경우 지역권을 설정하고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현재 지역권을 매입하고 있지는 않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4b. p.1; 김승중 2015b. p.133). 그러나 주정부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8년 1월 현재 28개주에서 주정부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¹¹⁾ 미국은 1977년부터 현재까지 약 42억 4,539만 달러(약 5조원)를 투입해서 1,190,998ha(2,943,019 에이커)를 매입하였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8. p.1).

9) Minn. Stat. §84C.03.

10) Minn. Stat. §84C.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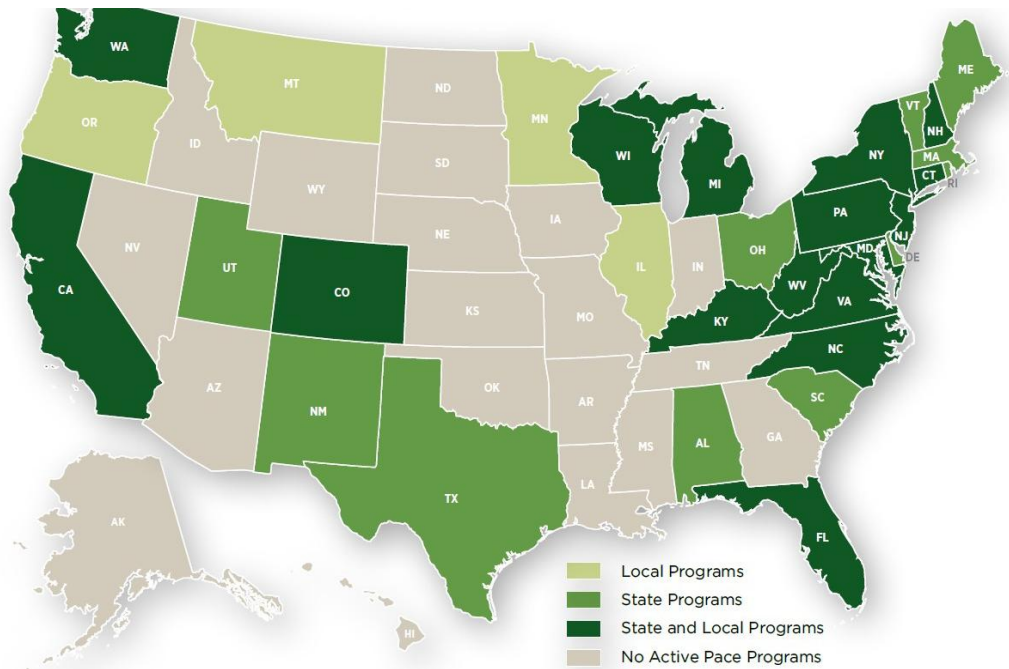
11) 애리조나, 조지아, 하와이 및 미주리 주는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아직 집행하고 있지 않음(American Farmland Trust 2018. p.1).

<그림 1> 주정부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 현황



자료: American Farmland Trust(2018, p.1)에서 재구성.

<그림 2> 주별 농지보전지역권 매입 현황



자료: American Farmland Trust(2014b), 김승중(2015b, p.130)에서 재인용.

3.5. 한계

농업보전지역권 매입제도는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며, 개발압력을 완전하게 억제하기는 어렵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2 p.2; 김승중 2015b. p.139). 특히, 지역권을 매각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수요를 제때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농지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도 발생한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2 p.2; 김승중 2015b. p.139). 또한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농지가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2 p.2; 김승중 2015b. p.133). 따라서 지역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의 지속적으로 투자가 요구된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2 p.2; 김승중 2015b. p.133).

4. 시사점

미국은 방대한 면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주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농지보전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사업을 통해 보전한 농지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농지의 약 2/3(119만ha)에 달하며, 이를 위해 투입한 재정규모는 약 5조 원 수준이다.¹²⁾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추진하여 8,389.5억 원을 투입했지만, 3,816ha의 농지를 매입한 데 불과하다(김수석 외 2016. p.44). 2019년 현재 농업인의 소득보전직불금 예산만 1조 5,000억 원에 달하지만¹³⁾ 경지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농지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발권 분리는 민법상 물권법정주의 및 개발권의 공시방법 등으로 인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 도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¹⁴⁾ 따라서 농지보전 지역권 매입제도를 직접 적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보호할 수

12) 미국은 1977년부터 현재까지 약 42억 4,539만 달러(약 5조 원)를 투입해서 1,190,998ha(2,943,019 에이커)를 매입(American Farmland Trust 2018. p.1).

13)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규모는 약 14.7조원이며, 쌀농업고정직불금(8,028억 원), 쌀보전변동직불금(2,533억 원), 밭농업직접직불금(2,078억 원), 경영이양직불금(472억 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546억 원), 경관보전직불금(84억 원), 친환경농업직불(381억 원), 피해보전직불(1,000억 원) 등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출하는 직불금 예산만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함(농림축산식품부 2019).

14) 개발권의 분리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발권 분리가 가능하다는 견해와 개발권 분리에 대한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법상 용적이전방법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는 견해 등이 있으나,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개발권을 용역물권의 하나로 포함하지 않는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1. 농지 개념의 재정립

농지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농작물의 경작지나 재배지 이외에 농지이용에 필요한 각종 시설 부지를 포함한다. 예컨대 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및 축사 등은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농지전용 없이 개별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농지의 규제완화로 인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과다하게 허용하고 있다. 특히, 축사는 전용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축사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농지를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농지법」 상 농지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관련 시설은 농지전용허가를 통해 무분별한 시설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4.2. 우량농지의 등급 세분화

우량농지의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농지는 농업적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지의 기능을 함께 갖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 상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농지전용에 대해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이로 인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소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농지전용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농지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대상으로 전략하고 있다. 따라서 과다한 농지전용을 방지하고,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지 등급을 세분화하여 농지전용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4.3. 농지보전부담금 강화

농지보전부담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공공시설을 위해 전용된 농지의 비율을 26.2%에 달하며, 농어업시설을 위해 전용된 농지의 비율은 3.4%에 불과하다. 즉, 대부분의 농지는 농어업시설 이외의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으며, 현행 농지보전부담금은

이상 이를 공시하기도 어려움(김승중 2015b, pp.139~140).

우량농지와 관계없이 농지전용 시 m^2 당 5만 원을 상한으로 부과하고 있어서 농지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비록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을 달리하고 있으나, 정부가 경지정리사업 등 재정을 투입하고,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후 개발사업을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 반한다. 따라서 공공개발사업이라는 이유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농지 등급화와 연계하여 우량농지의 보전부담금을 상향 조정하여 우량농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

4.4. 농지보전직불금 신설

농지보전직불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규제를 강화하고, 농지전용을 제한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잠재적 개발가치가 상승으로 인해 농지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소유자는 상대적인 재산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우량농지 등 농지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엄격하게 관리하되, 농지규제에 따른 가치감소를 보전할 수 있도록 농지보전직불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농지전용을 제한하는 대신 농지가치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와 같이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 이외에 농지를 유지하고 보전하는 데 대한 농지소유자의 기여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농지보전직불금의 재원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상향 조정 및 감면제도 개선을 통해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지 등급화를 통해 우량농지를 기준으로 농지보전직불금을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수석·김홍상·박지연·김부영·황연수. 2016. 농지은행사업 개편을 통한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김승중. 2015a. “미국 농지법에 대한 법적 검토와 시사점”. 「미국헌법연구」. 미국헌법학회.
- 김승중. 2015b. 3.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제21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19.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 통계청. 2019. 2. 25. 2018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 American Farmland Trust, 2008a. 2. “The Farmland Protection Toolbox”, Farmland Information Center.
- American Farmland Trust. 1998. “Right-To-Farm Laws”, Farmland Information Center.
- American Farmland Trust. 2006. 8. “Farmland Protection Policy Act”, Farmland Information Center.
- American Farmland Trust. 2008b. 4.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Farmland Information Center.
- American Farmland Trust. 2012. 9. “Farmland and Ranch Lands Protection Program”. Farmland Information Center.
- American Farmland Trust. 2012. 9. “Purchase of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s”. Farmland Information Center.
- American Farmland Trust. 2014a. 10. “Purchase of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s”, Farmland Information Center.
- American Farmland Trust. 2014b. 8, “Status of State PACE Program”. Farmland Information Center.
- American Farmland Trust. 2016.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s”, Farmland Information Center.
- American Farmland Trust. 2018, “Status of State PACE Program”. Farmland Information Center.
- USDA. 2017. Census of Agriculture, Table 9. Land in Farms, Harvested Cropland, and Irrigated Land by Size of Farm: 2017 and 2012. (https://www.nass.usda.gov/Publications/AgCensus/2017/Full_Report/Volume_1,_Chapter_1_US/st99_1_0009_0010.pdf) (검색일: 2019.7.28.)